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동자·사용자 대표위원의 구체화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37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노동자·사용자 대표 위원회 구체화	3

I. 제안경위

2025년 1월 15일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9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노동자·사용자 대표 위원회 구체화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용보험위원회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각각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9조제2항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① ~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u>⑤·⑥</u> (생략)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 <u>⑥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 <u>⑦·⑧</u>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

(생 략) ② 심사위원회는 <u>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u>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⑨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u>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u> ----- -----. ③ ~ ⑨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는 이 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고용보험위원회는 고용노동부차관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數)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한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 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심사관의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현행법은 고용보험위원회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에 대하여 각각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와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고용보험위원회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각각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시행령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임.

개정안은 위원회에 더 큰 대표성을 부여받은 노동자 대표 및 사용자 대표가 참여하도록 하여 정책 심의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3(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각각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와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②·③ (생략)

제130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임명) ①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각각 대통령이 위촉한다.

②·③ (생략)

다만,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 속하지 않은 대표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총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맹 노동조합 조합원이 전체 노동조합원의 17.5%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위원 위촉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음.

<표> 2023년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 비교

구 분	인원수	비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160,162명	4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086,618명	39.7%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7,821명	0.3%
전국노동조합총연맹	1,441명	0.1%
국민통합노동조합총연맹	1,068명	0.0%
대한민국노동조합총연맹	511명	0.0%
미가맹	479,758명	17.5%
합 계	2,737,379명	100%

※ 자료 : 고용노동부, 『2023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2024.12.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위원을 총연합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보험가입자의 대표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현재 고용보험위원회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38